

학생생활관 사생 생활수칙

제정 1998. 3. 1

개정 2001. 3.1, 2004. 9. 1, 2005. 4.15, 2007. 3. 1, 2008. 3. 1, 2010. 9. 8,
2012. 5. 29, 2014. 8. 18, 2015.10.21, 2019. 10. 7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문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5조에 의하여 학생생활관의 효율적인 생활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<개정 2012.5.29>

제2조(명칭) 이 수칙은 문경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<개정 2012.5.15>

제3조 삭제 <2014.8.18>

제4조(사실배정) 사실의 배정은 관장의 지시에 따라 행해지며 일단 배정된 사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제5조(외부인 제한) 사생은 관장의 허락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사내에 동행할 수 없으며, 특히 외부인의 숙박을 금한다.

제6조(퇴사)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기에 퇴사할 수 없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관장이 퇴사 조치할 수 있다.

1. 휴학, 제적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자
2. 미등록자 및 학생생활관 납부금 미납자
3. 학칙에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
4. 사칙을 위반하여 퇴사결정이 된자
5.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2장 사내생활

제7조(출입)

1. 현관문은 사감이 06:00에 열고 23:00에 닫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시간을 기준으로 폐문한다.
2. 폐문후의 출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늦은 귀사생의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벌점 처분된다.
3. 외출시에는 각 실 출입문의 열쇠를 반드시 사생이 보관하며, 열쇠를 분실 하였을때는 변상한다.

제8조(식사)

1. 식사시간 : 아침 08:30~09:10(09:00분까지 배식), 점심 12:00~14:00, 저녁 17:40~19:10(19:00까지 배식)로 정한다.
2. 식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,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식사예절을 지켜야 한다.

제9조(점호 및 소등)

1. 점호는 사감 및 해당 층장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. 점호는 매일 실시하며, 23:00~23:30사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<개정 2014.8.18>
3.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호시간에 늦은 사생은 귀사즉시 보고해야하며 점호를 불이행한 경우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다.
4. 사실의 소등은 24:00로 한다.
5.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에는 불시점호를 실시한다.

제10조(금지사항) 사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 다음 사항을 금한다.

1. 전열기 및 인화물질 사용
2. 흡연, 도박, 점호 후 이탈, 음주, 폭행, 절도
3. 시설물 및 비품의 임의이동, 변형, 손상, 파괴
4. 공고물의 무단부착 및 배포
5. 외부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
6. 삭제 <2014.8.18>
7. 잠옷 또는 내의 차림으로 사생실 밖 통행하는 행위
8. 24:00시 이후에는 각층 및 현관 출입을 통제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는 사감의 허락을 얻어 출입할 수 있다.
9. 기타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

제3장 면회, 외박, 통신

제11조(면회) 학생생활관 내에서 면회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금한다.

제12조(외박)

1. 외박을 희망하는 사생은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감실에 제출을 한다.<개정 2014.8.18>
2. 외박 시 허가 기간 내에 통고 없이 정호 시간까지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.<개정 2014.8.18>
3. 무단외박 일수가 1주일을 초과되면 퇴사처리 한다.<개정 2014.8.18>

제13조(통신)

1. 삭제 <2014.8.18>
2. 우편물은 1층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본인이 직접수령하며, 특수(소포, 등기, 택배) 우편물은 사감실에서 확인 후 수령한다. <개정 2014.8.18>

제4장 관리, 변상, 보고

제14조(관리) 학생생활관내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 물품의 파손 또는 고장이 있을 때에는 사감실에 신고하고 비치된 수리요구 접수부에 기재한다.

제15조(변상) 학생생활관내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6조(보고 및 건의)

1. 사생은 관장 및 관계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2. 도난, 상해 기타 사고나 습득물은 반드시 사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3. 사생의 의사나 건의사항은 사생자치위원회를 통하여 관장에게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4.8.18.>
4. 개인의 귀중품은 개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나 파손 시 생활관내에서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신설 2019.10.7>
5. 절도, 폭행 등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피해를 준 경우 퇴사 조치한다.<신설 2019.10.7>

제5장 공고, 행사, 집회

제17조(공고 및 게시)

1. 사생은 공고 및 게시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.
2. 사생이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18조(행사 및 집회)

1. 사생은 사내의 공식적인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일주일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6장 납부금

제19조(납부금) 사생은 관리비, 자치회비 등의 납부금을 학생생활관 등록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.<개정 2014.8.18>

제20조(납부금 관리)

학생생활관 납부금에 대한 관리는 학생생활관 규정 제 5장에 따른다.<개정 2014.8.18>

[제목개정 2014.8.18]

제7장 사생자치회 <개정 2014.8.18>

제21조(설치) 사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질서유지를 통한 건전한 학생생활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생자치회(이하 “자치회”라 한다.)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22조(구성 및 임무)

1. 자치회의 임원은 비밀 무기명 투명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.<개정 2014.8.18>
2. 자치회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잔여임기동안 부회장이 직무대행한다. 한 학기 미만일 때는 사생자치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4.8.18>
3. 자치회는 사내 질서유지, 환경정화, 사생복지 향상 등 학생생활관 공동생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함을 그 임무로 한다.<개정 2014.8.18>
4. 자치회는 총장 중에서 부장 6인(부회장, 총무, 기획, 복지, 문화, 체육)을 임명하며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.<개정 2014.8.18>

제8장 자치회장 및 층장 <개정 2014.8.18>

제23조 삭제 <2014.8.18>

제24조(층장의 할 일)

- ① 각 층의 일석점호를 점검한다.
- ② 각 층의 유동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회장을 통해 사감에게 보고한다.<개정 2014.8.18>
- ③ 기물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층내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.
- ④ 공동 사용장 청소 및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확인하여 자치회장에게 보고한다.<개정 2014.8.18>
- ⑤ 건의사항을 자치회장에게 보고한다.<개정 2014.8.18>

제25조(자치회장의 할 일)

- ① 관장을 보좌하고 관장의 지시 하에 사생생활을 통괄 지휘한다.
- ② 각 층장의 일석 점검사항을 보고 받아 관장에게 보고한다.
- ③ 외출, 외박의 명단을 관장에게 보고한다.
- ④ 각 층장으로부터 층내의 청결정돈 및 이상유무를 보고 받아 관장에게 보고한다.
- ⑤ 학생생활관 학생의 면학분위기 및 사생의 생활전반을 파악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.
- ⑥ 기타 사생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장과 협의하여 조치한다.

[제목개정 2014.8.18]

제9장 상·벌점제도

제26조(처벌의 종류) 사생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다.

1. 경고처분 (학과장님께 명단공개) <개정 2015.10.21>

- 1)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
- 2) 1회 벌칙에 대하여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

2. 퇴사처분

학생생활관 규정에 의거 퇴사처분에 해당하는 벌칙행위 및 벌점이 15점 이상인자

3. 사고

점호 불참 및 점호 후 사생이 외부에서 불의의 사고나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, 그 책임은 학생생활관 혹은 학교에서 지지 않는다.<개정 2014.8.18>

- 4.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는 다음 학기 학생생활관 입사를 제한 한다.
(단 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.)
- 5. 벌점으로 인한 퇴사 시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생생활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<개정 2014.8.18>
- 6. 벌점 10점 이상인 사생은 교내 봉사활동으로 상점을 받아 벌점을 감할수있다.
- 7. 상·벌점기준은 <별지>와 같다.
- 8. 벌점 차감을 위한 상점 취득은 벌점 받은 시점으로 한 달 이내로 한다. <신설 2014.8.18>

부 칙

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> <개정 2015.10.21>

상 점 기 준 표

☐	내용	점수
☐	15시간 교내 봉사	5점
☐	10시간 교내봉사	3점
☐	행사 도우미	
☐	캠페인 참여(일주일간 잔반 단속 및 식당 예절 캠페인 등 참여)	2점
☐	분리수거(일주일간 분리수거 시행)	
☐	청소 도우미(일주일간 생활관 주변 청소)	
☐	신발정리(1주일 누적 총별 1개 호실 선정)	1점
☐	모범 사생(사생실 청소 및 점호 참여도 등)	
☐	기타 공동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자 <신설2015.10.21>	1~3점

별 점 기 준 표

내용	점수
절도, 방화, 파렴치 행위자 이성을 호실에 대동한 자 생활관 기물을 파손한 자 폭행 행위자 (신설) 사내 취사행위자 및 동조한 자 (신설) 사내 도박자 및 장소 제공한 자 (신설) 법적 전염병 감염자인 자 (신설) 전열기구 및 인화물질, 위험물질 반입자(신설)	15점
외부인 무단대동 생활관 법정교육에 무단 불참자 (신설) 점호 후 사내 무단 이탈한 자 만취 귀가하여 소란을 피운자 (신설) 외박계 대리, 허위 작성 (신설) 사내 음주자 및 반입자(신설)	10점
사내 흡연한 자 지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자 학생생활관 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(신설) 풍기문란(과도한 애정행각 및 24:00시 이후 생활관 내 여성과 만남을 가지는 자)<신설 2015.10.21>	7점
무단외박 학생증 대여 식당에서 식사 제공자 학기말 퇴사시 사생실 가구 배치 변경 복귀하지 않은 자 (다음 학기 입사시 벌점) 개,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 (신설)	5점
점호 후 타실에 출입한 자 생활관 내에서 소란, 소음을 일으킨 자 지정된 시간 이후 배달음식 반입한 자 비상키 3회 이상 대여한 자 자치회 지시에 불복(공동체 생활 질서유지)(신설) 지시사항 불이행 생활관 주변 침, 담배꽂초, 쓰레기를 버리는 자	3점
사생실 청소 불이행 자, 지연귀가 각종 서류 미제출 자 실내외화 미구분 자	2점
귀사확인 안한 자 잔반을 남기는 행위자	1점
기타 공동생활에 부적합 또는 각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자	1-10점